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57
----------	------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의자 : 박광온 · 윤관석 · 권미혁

박완주 · 김해영 · 강병원

서영교 · 김상희 · 도종환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제2호).

법률 제 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 략)</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 원이 될 수 없다.</p> <p>1. (생 략)</p> <p>2.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p> <p>3. ~ 5. (생 략)</p> <p>⑦ ~ ⑨ (생 략)</p>	<p>제5조(임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피성년후견인</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⑦ ~ ⑨ (현행과 같음)</p>